

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서

아래의 당사자들은 2019 년 04 월 11 일 본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(이하 “본 계약서” 또는 “본 계약”이라 함)을 체결한다.

채권자 겸 근질권자 : 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 (이하 “채권자” 또는 “근질권자”)

채무자 겸 근질권설정자: (이하 “채무자” 또는 “근질권설정자”)

전 문

근질권설정자의 대출채무자 []과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는 2018 년 02 월 22 일자로,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47 외 1 필지 양도마을 제 107 동 (이하 “신탁부동산”이라 함)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(이하 “담보신탁계약”)를 체결하였고, 근질권설정자는 위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포함하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원본 및 이익에 대한 우선수익권 및 우선수익권을 표창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보유하는 등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가 되었다.

한편, 근질권설정자는 근질권자와 2019 년 04 월 11 일자로 금 삼천구백만원정 (₩ 39,000,000)의 대출약정서(이하 “대출약정”)을 체결하였는바, 그와 관련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근질권설정자는 근질권자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및 수익권증서(이하 “담보물”)에 대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자 한다.

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다 음

제1조 [정의]

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,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대출약정서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 다만, 신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본 계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,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제2조 [근질권의 설정]

(1) 근질권설정자는 근질권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담보물 위에 제1순위 근질권을 설정한다.

1. 담보한도 : [금 팔천오백만원정](₩ 85,000,000)
2. 피담보채무의 범위: 대출원리금 및 기타 대출약정서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근질권자에게 대해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(이하 “피담보채무”라 함, 한편 이를 근질권자의 입장에서 “피담보채권”이라 함)



제9조 [준거법 및 관할법원]

본 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고,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신탁계약서, 대출약정서와 일반적인 금융관행에 따르기로 한다.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들간의 모든 소송이나 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따르기로 한다.

제10조 [일부 무효 등]

본 계약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내용이 법령 기타 사유에 따라 무효,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이 계약서에 명시된 나머지 내용의 효력,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제11조 [기타사항]

- (1)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당사자는 그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(2) 근질권설정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상 종료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즉질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본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
질권자가 1부, 나머지 질권설정자가 1부씩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.

채무자 겸 근질권설정자

채권자 겸 근질권자

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동 37, 6층(여의도동,기계산업진흥회)
대표이사 김 학 형

별지